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의 기능, 관리 운영내용을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6로 한다.

제4장 제22조부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2조(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지원센터 민간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u></p> <p><u>제22조(지원센터 설치)</u>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u>제23조(지원센터 기능)</u>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u>제24조(관리 및 운영)</u>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p> <p>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지원센터 민간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2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